

부산광역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1. 17. ----- 사하구청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. 17.
- 다. 상 정 일 자 : 2003. 1. 22.(제10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,
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도시개발과장 김윤성)

가. 제안이유

-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 운용하기위함

나. 주요골자

- 위 원 장 : 구청장 → 부구청장
- 부위원장 : 부구청장 → 위원중 호선
- 위 원 수 : 15 ~ 25인 이내
 - ▷ 현 17명 : 부산광역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제3조 제1항
- 분과위원회 구성 : 위원회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들 수 있음.
 - ▷ 2개 분과위원회 구성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

- 본 조례 제정건은 2003년 1월 1일부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통합시행됨에 따라 기허 설치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사하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함이 입법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
- 특히 관련법에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례 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